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관세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OECD Update

Pillar2 blueprint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20. 10. 12)

1. (구성요소 구체화) 필라2의 핵심 구성요소를 ①세원잠식방지 규칙, ②원천지국과세 규칙, ③규칙 간 조정(적용순위 등)으로 구분
- 세원잠식방지 규칙은 다시 ①소득산입 규칙(세액공제전환 규칙) 및 ②비용공제부인 규칙으로 구분하고, 그 특별 규칙도 설명
 - 각 핵심 구성요소의 세부 구성요소도 구체화

세원잠식방지 규칙	특별 규칙	원천지국과세규칙	규칙 간 조정
적용범위	단순화된 소득산입 규칙	적용범위	적용순위
실효세를 계산		적용요건	조약과의 관계
손실 이월공제	독립기업	조정	조정
적용 예외		분쟁 예방	
실효세를 계산 단순화			
소득산입 규칙	비용공제부인규칙		
최종모회사 우선	구성회사간 추가세액 배분방안		
지분 분할소유			

삼정 KPMG

이전가격 & 관세본부

9 November 2020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이사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2. (핵심쟁점 명시) 적용 예외, 실효세율 합산 범위, 규칙 적용순위, 최저한세율 등은 국가간 이견이 커서 정치적 합의 필요

3. (적용 범위) 다국적기업집단과 그 구성기업에 적용

- (제외기업) 투자펀드·연금펀드, 국가기관·국제기구·비영리단체 등
- (규모기준)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매출 7.5억유로 미만(약 1조원)
- (추후 논의사항) 해운업 적용 제외 여부, 규모기준 미충족 기업에 대한 거주지국의 재량 인정 여부 등

4. (실효세율 계산) 해당국가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부분을 추가세액(top-up tax)으로 상대방국가에서 과세

<p>■ 실효세율 = 대상세액 ÷ 과세소득(과세표준, 연결회계기준에 기반한 세전이익에 세무조정 항목을 일부 반영)</p> <p>■ 추가세액 = 과세소득 × 추가세율(최저한세율 - 실효세율)</p>

- (손실 이월공제) 손실은 기간제한 없이 이월공제 허용 : 최저한세 초과세액은 당해연도 및 이후연도에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세액에서 공제(IIR tax credit)
- (추후 논의사항) 실효세율 계산 범위(blending)*, 실효세율 계산 단순화 방안** 추가논의, 최저한세율 구체화 등
 - * OECD 사무국은 국가별 구분 계산(jurisdictional blending) 제안
 - ** ①국가별 보고서 활용 ②최소이익 규정(de minimis exclusion) ③특정연도 실효세율을 수년간 사용 ④BEPS 위험이 낮은 국가 적용 제외(white list) 등 방안 논의 중

5. (적용 예외) OECD 사무국은 실질 사업활동에 기반한 정량적 기준에 의한 적용 예외(formulaic substance-based carve-out) 제안 (제외기업) 투자펀드·연금펀드, 국가기관·국제기구·비영리단체 등

- 해당국가 내 실질 사업활동*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 실질 사업활동에 대한 최저한세 부과 방지
 - * OECD 사무국은 실질 사업활동 기준으로 급여(인건비)와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제안
- (추후 논의사항) 고정율 구체화, 적용 예외 인정방식 및 정량 기준 보완 등 추가논의 필요

6. (소득산입 규칙)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는 그 거주지국에 지분율만큼 추가세액 부담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이사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 저세율국가 소재 국외관계사 추가세액을 합산하여 모회사에서 부담

※ (세액공제전환 규칙) 저세율국가에 국외관계사가 아닌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모회사는 그 거주국이 소득면제 방식을 채택한 경우 소득산입 규칙 적용 불가 → 소득면제 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추가세액 부담

- (최종모회사 우선) 다국적기업집단의 최종모회사에 우선 적용 → 적용이 어려우면 아래 중간모회사에 적용(top-down approach)
 - (추후 논의사항) 지분 분할소유시 적용 방안* 등
- * 최종모회사가 중간모회사 지분을 제3자와 분할소유하는 경우 → OECD 사무국은 최종모회사가 아닌 중간모회사가 소득산입 규칙을 적용하는 방안 제안

7. (비용공제부인 규칙) 저세율국 소재 구성회사에 비용으로 공제되는 지급금을 지급한 다른 구성회사는 추가세액 부담

- (소득산입 규칙 우선적용) 비용공제부인 규칙은 소득산입 규칙의 보완적 규정(backstop) → 저세율국 소재 구성회사를 직·간접 지배하는 국외 관계사에 소득산입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 (추후 논의사항) 기술적 사항(동 규칙이 다수의 구성회사에 적용되는 경우 구성회사간 추가세액 배분방안, 배분한도 등) 중심 논의 필요

8. (원천지국과세 규칙) 소득의 저세율국 이전을 통한 원천지국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 규칙

-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지급금에 대해 원천지국에 최저한세율까지 추가세액 과세권 인정 : 저세율국 여부는 실효세율이 아닌 명목세율로 판단
 - (추후 논의사항) 거래·기업규모 기준 도입 여부 및 금액, 관계사간 거래 제한 여부*, 지급금의 범위 등 추가논의 필요
- * OECD 사무국은 관계사간 지급금에만 적용 제안
- ** OECD 사무국은 이자, 사용료, 고위험 서비스대금(무형자산 사용료·보험료 등) 등에 제한 제안

9. (규칙 적용순위) 규칙의 중복적용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OECD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규칙 적용순위 및 조정 제안

- (원천지국과세 규칙 - 다른 필라2 규칙) 원천지국과세 규칙 우선 적용 → 동 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다른 필라2 규칙 관련 실효세를 계산시 반영
- (다른 필라2 규칙- 기존 규칙) 기존 규칙(CFC·원천징수세액) 우선 적용 → 기존 규칙에 따른 세액은 다른 필라2 규칙 관련 실효세를 계산시 반영
- (소득산입 규칙- 비용공제부인 규칙) 소득산입 규칙 우선 적용
- (소득산입 규칙 간) 최종모회사 우선 적용(top-down approach)
- (세액공제전환 규칙) 소득산입 규칙에 보완적으로 적용(→ 다른 규칙과의 순위는 소득산입 규칙과 동일)

- (추후 논의사항) 규칙 적용순위 및 조정은 추가논의 필요

2. 국제조세/관세 Update

구글세 대응에 힘 실는다...기재부에 디지털세 전담과 신설 (이데일리, 2020.10.1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91766625934560&mediaCodeNo=257>

국제사회가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다국적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디지털세(稅) 최종합의안을 내년 중반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3년 한시로 운영되는 이 조직은 디지털세 대상에 삼성이나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도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상황에서 국제협력 관계와 제도 정착에 힘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세를 기점으로 국제조세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구적이고 규모가 큰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제사회가 다국적기업에 적용할 디지털세 기준에 구글·페이스북뿐 아니라 삼성이나 현대차, LG전자 등 소비자대상사업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내 대기업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사실 디지털세 대상에 소비자대상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이 미국계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라 소비자대상사업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워 확대됐다는 평가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전체 인력이 3명에 불과한 디지털세TF를 꾸려 대응해왔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세를 기점으로 국제조세 논의가 불이 붙을 수 있다며 한시조직이 아닌 영구적이고 큰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조세 최신 예규/판례 : 조심 2020 중 1507, 2020.10.06

처분개요

- ① 청구법인은 무선 통신장치에 사용되는 기술의 개발 등을 하는 상장된 미국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체결한 Infrastructure and Subscriber Unit 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이후 여러번 계약변경이 이루어졌고,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의 셀룰러 관련 특허권 사용을 허여하고 사용료를 수취
- ② 청구법인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납부
- ③ 청구법인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청구법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단순히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등록한 특허권의 개수가 청구법인이 국내외에서 등록한 특허권 전체의 개수에서 차지하는 각 월별비율로 안분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계산하여 2014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중 약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행정청구 제기

결론

한·미 조세조약은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권 배분기준으로 사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내세법에 따라야 함.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권 등의 국내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함.

관세 최신 예규/판례 : 조심 2019 관 0079 (2020.09.08)

결정요지 : FTA 관세특례법은 협정관세의 사전적용을 받지 못한 수입자에 한해 사후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사후적용

받은 후 수정신고로 이를 배제하였으므로 다시 사후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사후적용 대상으로 보더라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후에 이 건 경정청구가 제기되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은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하였을 뿐,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높아지는 '무역장벽'... 한국산 수입규제 작년보다 늘어 (천지일보, 2020.11.0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치, 안보 등의 이유로 각국의 무역장벽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10월 초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27개국 228건으로, 유형별로는 반덤핑 169건, 국가별 미국 47건, 품목별 철강·금속이 109건으로 가장 많음
- 미국의 경우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며, 국내 경제단체가 미 대선 후보의 통상공약을 분석한 결과, 누가 당선되어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비관세장벽 등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자칫하단 거래중단"...해외 관세당국, 일반 원산지증명 요청 급증 (한국세정신문, 2020.10.26.)

-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FTA 특혜관세를 받지 않는 일반수출기업에 대해서도 해외 관세당국의 일반 원산지증명서 검증 요청이 크게 증가(전년 대비 2018년 16.5배, 2019년 1.5배 이상 증가)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이 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검증과정에서 불합격하면 수입국의 벌금·과징금 부과나 형사상 처벌은 물론 수입업체와의 거래 중단까지 감수해야 하는 등 국내 수출업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큼
- 국내 수출업체의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특혜가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은 실정을 반영하여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검증 요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3,890개 기업을 발굴해 우선 지원에 나설 예정

3.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Why Tax Was—And Will Remain—at the Epicenter of a Covid-19 Recovery (October 26, 2020)

포스트 코로나19 (COVID-19) 시대 경기 회복을 위한 조세(Tax)의 역할 (2020.10.26.)

Milken Institute가 개최한 2020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조세(Tax)가 글로벌 경기회복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Covid-19 발발 이래 138개 국가 및 관할지역에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 ·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고용 유지 독려, 특별 세액공제 및 기타 인센티브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가계소득을 보호하며,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의 세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양적 완화를 통해 현재까지 미국, 독일, 일본의 총 GDP를 초과하는 규모인 27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글로벌 경제에 투입되었습니다.

본 조치는 자유시장 원리가 경제정책의 핵심이면서도 정부의 개입, 특히 조세 관련 정책이 금융위기에 대응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가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낮은 경제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경기불황에 접어들었습니다.

COVID-19 시대 이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유시장 이론 지지자들의 주장이 있었으나 COVID-19 시대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경기 부양을 위한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사용하여,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저세율을 유지하여 경제활동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결국 막대한 부채와 관련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성장 정책의 일환인 저세율 및 저금리 정책에서 국가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2. 공급망의 이동

전염병으로 인한 국경폐쇄 시 많은 국가에서 (의약품 등) 주요 재화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국은 조세 관련 정책을 활용하여 기업이 소비자에 보다 근거리에서 재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COVID-19 확산으로 인해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지고 저소득층은 더욱 빈곤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COVID-19는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순자산이 높은 개인과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조세의 역할 및 세무당국의 기능

향후 조세 관련 행정 기능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세무 당국은 개인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경감하고, 27 조 달러 이상의 글로벌 경기 부양책을 집행했으며, 소득세·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로 실시간 데이터와 거래를 처리하게 됨에 따라 COVID-19는 전세계 세무당국의 디지털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조세는 변화의 중심입니다. COVID-19 확산 이전부터 정부와 기업에 미치는 조세의 영향력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 세무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업운영 모델로 재편성하여 강력한 규제와 신기술 발전에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COVID-19 확산 이래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경기회복과 발전을 위한 조세의 기능

세무 기능에 대한 책임의 증가는 재정이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세무 부서는 주로 비용 부서로 간주되었고, 1990년대에는 일부 사례에서 가치 창출 부서(value

center)로 여겨져 많은 반발을 야기했으며, 2000년대 초까지는 조세 위험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무 부서의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사업 부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업무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신뢰 센터(trust center)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Singapore: FAQs on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COVID-19 \(October 27, 2020\)](#)

싱가포르: COVID-19가 이전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FAQ 발표 (2020.10.27.)

싱가포르 과세당국("IRAS")은 COVID-19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COVID-19의 영향을 받은 납세자에 대한 이전가격 고려사항을 다룬 "자주 묻는 질문(FAQ)" 양식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본 지침의 전반부는 COVID-19가 사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 납세자가 이전가격 문서화 작성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또한 COVID-19로 인해 이미 기존에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뿐만 아니라 신규, 또는 현재 검토 중인 APA 신청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COVID-19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를 위한 이전가격 문서화 지침

IRAS는 COVID-19가 각 기업들에게 이전가격 측면에서 중대하고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여 납세자의 2021년 평가 시 개별 사업연도 분석이 아닌 다년도 분석(예: 2018-2020 사업연도 3개년 가중평균 이익률 활용)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COVID-19로 인한 불안정한 결과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년도 분석은 IRAS와 협의 하에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또한 IRAS는 납세자가 이전가격 거래의 정상가격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이전가격 문서화에 포함할 수 있는 추가 정보들의 목록을 규정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결정 권한 및 역량이 있는 관계당국
- 경제적 실질 및 계약 상 약정을 근거로 한 위험의 배분

- COVID-19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관련된 세부 정보

COVID-19의 결과가 APA에 미치는 영향

IRAS는 APA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납세자의 사업이 COVID-19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신규 APA나 APA 갱신 신청서의 접수 가능
- 현재 검토 및 협상 중인 APA의 경우, 납세자는 COVID-19가 APA 신청서 상에 기술된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가격 측면에서의 영향이 있는지 검토 및 평가하여 IRAS에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예상되는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IRAS는 해당 APA를 보류하고 이후 단계에서 신청서를 재검토 가능

APA가 체결되어 있는 납세자는 COVID-19의 결과로 중대한 가정이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러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이 사실을 IRAS에 통보해야 하며 IRAS는 각 사례를 검토 후 향후 진행 방법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IRAS는 COVID-19가 납세자의 사업 운영과 수익성에 미친 영향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과 분석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COVID-19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기에 발생 가능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충분히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COVID-19는 이전가격 결정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COVID-19의 영향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한 양적 및 질적 증빙의 구비의무는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싱가포르 내 납세자들이 2020년 평가에 대한 이전가격의 정상가격 준수 여부(Compliance)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2020 사업연도 종료 전에 2021년 평가를 고려한 이전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사전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OVID-19의 영향은 2021 사업연도 이후에도 모든 사업에서 체감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IRAS가 향후 지침을 수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app

